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59

발의연월일: 2025. 3. 28.

발 의 자: 김도읍·장동혁·이헌승

신동욱 • 구자근 • 권영진

조배숙 • 박형수 • 김성원

인요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외에도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휠체어 탑승 차량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의 도 입과 운영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이용자·차량의 종류 및 탑승설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 전반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,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종류,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·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입하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의2(교통약자의 이동 지원)	제16조의2(교통약자의 이동 지원)
① ~ ② (생 략)	① ~ ②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
	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
	교통약자의 범위, 특별교통수단
	외의 차량의 종류, 특별교통수
	단 외의 차량에 장착하여야 하
	는 탑승설비의 구조·재질 <u>및</u>
	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
	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